

서산시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03. 5. 6

총무위원회

##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 2003. 5. 1
- 나. 제출자 : 서 산 시 장
- 다. 회부일자 : 2003. 5. 1
- 라. 상정일자 : 2003. 5. 6

## 2. 제안설명요지(제안설명 : 자치행정과장 문철주)

### 가. 개정이유

- 건축법시행령중개정령(대통령령 제17926호)이 공포·시행됨에 따라 기존의 건축법시행령 제117조제4항(일부 건축업무의 읍·면·동장 위임처리규정)이 삭제되어, 그동안 읍면장에게 일부를 위임하여 처리하던 건축업무 전반이 시장 업무로 변경되어
- 서산시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를 현실에 맞게 정비코자 함.

### 나. 주요골자

- 건축법시행령 개정에 따른 읍면장 위임사항중 건축관련분야 폐지

- 건축신고의 접수처리
-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의 접수 처리
- 용벽등 공작물 축조신고의 접수처리 등
- 세무분야 위임사무중 근거법령 미기재 사무에 대한 근거법령 정비, 민방위분야로 되어있는 재해 및 응급조치를 건설분야로 조정하고
- 보건분야중 「대마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으로 되어있는 포괄적 위임사항을 항목별로 세분화하여 위임근거를 명확히 함.

### 3. 전문위원 검토의견 요지

- 본 개정 조례안은 읍·면·동 기능전환의 일환으로 건축법시행령이 개정·공포 시행됨에 따라 그동안 일부 건축업무의 읍·면·동장 위임처리규정인 건축법시행령 제117조제4항이 삭제되어 시장의 업무로 변경된 사항과
- 세무분야에서 재산세, 농업소득세, 종합토지세, 사업소세 등의 시세와 관련된 대장 비치 및 정리에 관한 사항의 근거법령의 기재와, 재해의 응급조치 사항을 민방위분야에서 건설분야로 조정하고,
- 보건분야의 대마관리에 관한 포괄적인 위임사항을 항목별로 세분화하여 위임근거를 명확히 하는등 서산시사무의 읍면동위임조례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려는 사항으로서 특이사항은 없음.
- 다만, 시장의 업무로 이관되는 건축업무의 경우 사무이관으로 인하여 원격지등 주민불편이 예상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순회 민원처리, 읍면 중계 민원처리등 대처방안을 적극 강구하여 민원인의 불편을 최소화 하여야 할 것임.

- 따라서 본 조례안은 관련 상위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바 본안과 같이 개정 시행하여도 특별한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됨.

4. 주요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 및 소수의견 : 없었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의안번호	제 50 호
의 결 년 월 일	2003. . . (제 회)

**서산시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제 출 자	서 산 시 장
제출년월일	2003년 5월 / 일

# 서산시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5
----------	---

제출년월일 : 2003. 4. / .  
제출자 : 서산시장

## 개정이유

- 건축법시행령중개정령(대통령령 제17926호)이 공포·시행됨에 따라 기존의 건축법시행령 제117조제4항 (일부 건축 업무의 읍·면·동장 위임 처리 규정)이 삭제되어, 그동안 읍면장에게 일부를 위임하여 처리하던 건축업무 전반이 시장 업무로 변경되어
- 서산시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를 현실에 맞게 정비코자 함

## 주요골자

- 건축법시행령개정에 따른 읍면장 위임사항중 건축관련분야 폐지
  - 건축신고의 접수처리
  -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의 접수 처리
  - 용벽등 공작물 축조신고의 접수처리 등
- 세무분야 위임사무중 근거법령 미 기재 사무에 대한 근거법령 정비, 민방위 분야로 되어 있는 재해 및 응급조치를 건설분야로 조정하고
- 보건분야중 「대마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으로 되어있는 포괄적 위임사항을 항목별로 세분화하여 위임근거를 명확히 함

## 기타 참고사항

- 입법예고 : 해당 없음
- 조례 개정사유 : 붙임 참조
- 관련법규
  - 건축법시행령(대통령령 제17926호, 2003년 2월 24일 공포)
  - 건축법시행령개정에 따른 사무이관 등 관련사항 통보  
[충청남도 행정 12200 - 711 (2003. 3. 17)]

서산시조례 제 호

## 서산시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

서산시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을 별지와 같이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1]

□ 읍·면장에게 권한 위임하는 사무

소 관	일련 번호	사 무 명	근 거 법 령
총 무 분 야	1	주민등록법 제17조의8, 법 제18조, 법 제18조의2, 법 제21조의 사항을 제외한 사무 다만, 법 제18조에 의한 주민등록표의 열람 및 등·초본 교부에 관한 사무는 읍·면장도 가능	주민등록법 제2조
세 무 분 야	1	시세 납세고지서, 독촉장, 최고장 등의 송달	지방세법 제51조, 제52조
	2	시세 징수금의 징수	지방세법 제177조
	3	주민세, 농지세, 사업소세 신고처리	지방세법 제173조, 제208조, 제250조
	4	납세관리인 지정	지방세법 제37조 제3항, 시세조례 제31조
	5	지방세 세목별 과세(납세)증명 발급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9조
	6	지방세 완납증명 발급	지방세법시행령 제19조
	7	시세 100,000원 미만 결손처분	지방세법 제30조의 3, 동법시행령 제14조
	8	시세에 부과된 국세의 징수	교육세법제10조, 농어촌특별세법 제8조
	9	시세와 관련된 다음의 대장비치 및 정리 가. 재산세 관련대장 나. 농지세 관련대장 다. 종합토지세 관련대장 라. 사업소세 관련대장	지방세법 제196조 지방세법 제212조 지방세법 제234조의 25 지방세법 제251조
	10	개간·간척 등으로 인한 비과세 신청 접수	지방세법 제202조, 시세조례 제43조

소 관	일련 번호	사 무 명	근 거 법 령
세 무 분 야	11	시세조례에 의한 신고규정 중 다음의 신고처리 가. 재산세 비과세(감면) 적용자의 신고 나. 공용·공익사업용 등의 폐지 신고 다. 건축물에 대한 신고 라. 선박에 대한 신고 마. 농지의 변동 신고 바. 토지에 대한 신고 사. 사업소용 건축물 신고 아. 사업소세 비과세(감면) 적용자의 신고	시세조례 제28조 시세조례 제29조 시세조례 제32조 시세조례 제33조 시세조례 제47조 시세조례 제79조 시세조례 제99조 시세조례 제100조
	12	시장사용료 부과징수	공설시장관리사용조례제4조
회 계 분 야	1	시유 잡종재산 대부계약 (다만, 재산평가액 1건당 5,000만원 토지에 있어서는 1,650m' 이하)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1조
건 설 분 야	1	재해의 응급조치	자연재해대책법 제39조
사 회 분 야	1	묘지에 관한 다음 사항 가. 묘지 납골 및 매장 신고 나. 묘지 개장 신고 다. 공설묘지 사용허가 및 관리	장사등에관한법률 제8조 장사등에관한법률 제8조 서산시묘지사용조례 제2조
환 경 분 야	1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 및 가로청소	폐기물관리법 제13조, 제15조
	2	공중화장실의 유지관리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법률 제16조
	3	폐기물 불법행위 단속	폐기물관리법 제7조
	4	정화조 설치신고, 준공수리 및 유지 관리 지도감독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 관한법률 제9조, 제10조
	5	생활폐기물 매립장 운영관리	폐기물관리법 제30조의 3, 동 시행규칙 제24조
산 립 분 야	1	입산신고	산림법 제98조 및 동법시행 규칙 제102조

소 관	일련 번호	사 무 명	근 거 법 령
보 건	1	방역소독약품의 수불 및 취약지 방역소독 업무	전염병예방법 제40조
분 야	2	섬유 또는 종이를 취급할 목적으로 대마 초를 재배하는 자에 대한 대마 취급허가 및 변경허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 6조, 동법시행규칙 제8조, 제 9조, 제12조
	3	허가증 등의 교부와 등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7조
	4	사고 대마류의 처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12조, 동법시행규칙 제23조
	5	대마 재배자의 보고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36조
	6	대마의 운반, 보관 등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7조